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91-3호

1991년도 공업발전기금 중 전기부문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요령 공고

'91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상공부고시 제'91-41호, '91. 10. 12)에 의거 전기부문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91년 10월 12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자금규모 : 13억원

2. 융자대상

• 전기기기 및 동 부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제외)

• 중견기업(다만,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제외)

3. 융자우선사업

(1) 상공부장관이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 시행계획으로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2) 상공부장관이 기계류, 부품 및 소재 개발대상으로 고시한 품목의 개발사업
(3)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 개발사업
(4)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사업 추진 업체의 일류화 대상품목의 개발사업
(5) 계열화 추진을 위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모기업체 단위로 구성된 수급기업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6)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7)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업
(8)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4. 융자조건

(1) 융자금리 : 연 6.5%
(2) 융자기간 : 5년이내 (2년거치기간 포함)
(3) 동일인당 한도 : 3억원(다만, 2개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5억원)
(4)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70%이내

5. 융자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6. 기금지원 제외대상

(1) 사업을 완료하고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비협조적인 자로서 심의회에서 기금지원 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융자받은 후 개발계획을 중단한 자(단, 개발 중단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다른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동일사업에 대하여 기금 지원을 신청한 자(다만,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자로서 그 다음 단계의 기술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 이를 동일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융자신청

(1) 신청기한 : '91년도는 '91. 11. 12까지
(2) 접 수 처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3) 구비서류
(개) 지원신청서(소정양식)……2부
(내)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대) 기타 참고자료